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항목		'26년도	전년('25년) 유형 평균
1 예산 규모	1-1 예산 규모 * 통합회계	7,694억	7,017억 9,493억
	- (회계별) 일반회계 7,070억, 기타특별회계 278억, 기금 346억 - 전년대비 약 677억 증가했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1-2 세입예산(재원별) * 일반회계	7,070억	6,538억 8,871억
	- (재원별 세입 예산) 보조금·보전수입 등 4,937억, 지방세·세외수입 1,299억, 조정교부금·지방교부세 834억 원입니다.		
1 예산 규모	1-3 세출예산(분야별) * 일반회계	7,070억	6,538억 8,871억
	- (분야별 세출 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4,684억, 행정운영경비 1,038억, 일반 공공행정 371억, 문화 및 관광 107억 등입니다.		
	1-4 지역통합재정통계 * 통합회계	8,073억	7,367억 9,694억
	- 우리구 및 우리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교육청을 포함한 지역 통합 예산규모는 8,073억으로 전년 대비 약 706억 증가했으며, 유형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2 재정 여건	2-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18.38%	19.63% 20.08%
	- 재정자립도는 세입 중 스스로 마련한 자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구의 '26년 재정자립도는 18.38%로 전년대비 1.25%p 하락했으며 유형평균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2-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30.17%	32.96% 29.99%
- 재정자주도는 세입 중 자율적으로 용처를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입니다. 우리구의 '26년 재정자주도는 30.17%로 전년대비 2.79%p 하락했지만, 유형평균보다도 높아 양호한 편입니다.			
2 재정 여건	2-3 통합재정수지 * 통합회계	적자(-253억)	-60억 -304억
	- 통합재정수지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활동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올해 우리구의 통합재정수지는 253억 적자이나,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 적자폭은 양호한 편입니다.		
	3-1 중기지방재정계획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우리구 예산은 '26년 8,561억, ~'30년 8,927억으로 연평균 1.1%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재정 운용 계획	3-2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구는 '26년 총 53개 사업(총 예산 652억)에 대해 여성-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 지자체는 '26년 총 34개 사업(총 예산 6억)에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공공장소 핸드폰 충전기 비치, 담배연기 없는 마을공원 조성을 위한 로고라이트 설치 등이 있습니다.		
3-4 성과계획서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 재정운용계획

3-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6	국외여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특별회계	3.2억	5.2억 2.5억
- 우리구는 '26년 공무원 국외 업무수행 및 훈련을 위해 약 3.2억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3-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38억	39억 24.4억
- 우리구에서 '26년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3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억원 감소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3-8	업무추진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4.8억	4.7억 4.8억
- 우리구의 '26년 구청장·부구청장·실국장 및 동장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2억 시책업무 추진비는 2.6억으로 전년 대비 약 1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9	지방의회 관련경비 * 일반회계	2.2억	2.1억 2.6억
- 우리구에서 '26년 지방의회의 운영 및 업무추진, 의원 국외여비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2.2억입니다. 전년대비 1천만원 증가했으며, 유형평균 2.6억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3-10	지방보조금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54.6억	55억 47억
- 우리구가 '26년 편성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액은 총 54.6억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47억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3-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복지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32억	25억 10억
- 우리구가 '26년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을 위해 지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한 예산(301-03)은 32억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10억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3-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구가 '26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25억, 공무원 일·숙직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1.8억,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25억입니다.			
3-13	예비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15억	15억 23억
- 우리구가 '26년 편성한 일반예비비는 12.5억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약 0.18%이며, 재해·재난목적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2.5억입니다.			

4 재정운용성과

4-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해당없음
4-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해당없음
4-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4억
- 우리구는 특별교부세 사업 취소 등의 사유로 지방교부세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해당없음

※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는 당초예산 총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상 회계는 각 항목별 표시사항 참고
 ※ 각 유형평균은 2월 22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통합재정 개요 작업 결과 수정될 수 있습니다.

2 항목별 공시사항

1 예산 규모

1-1 예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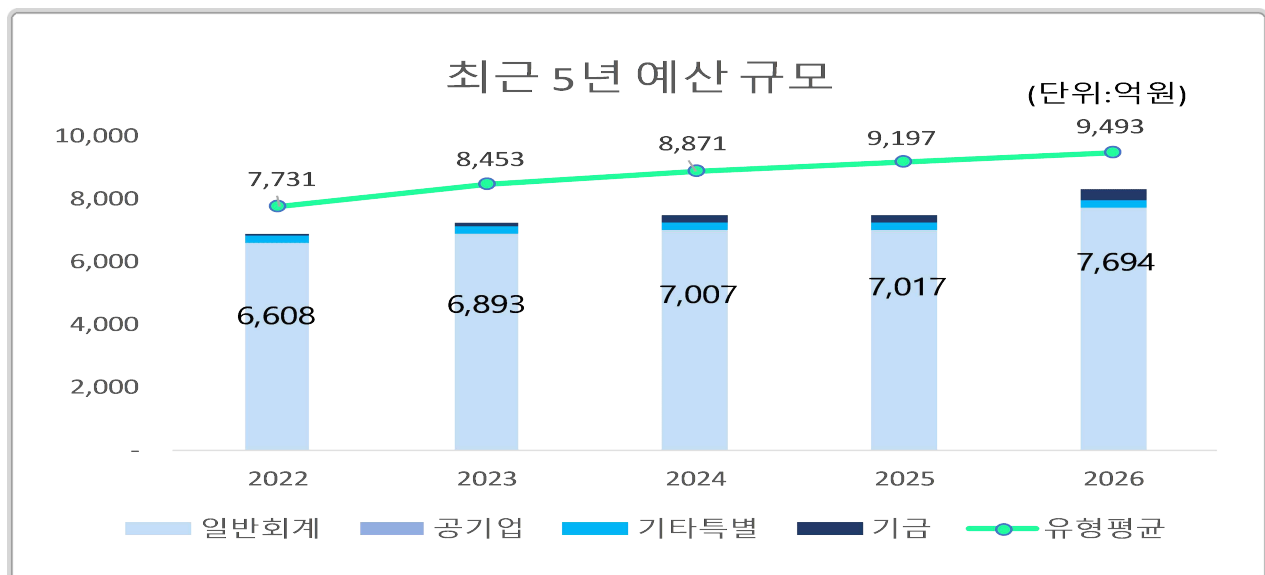
▣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분류되며, 이를 합쳐 통합회계라고 합니다. 우리구의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7,694억이며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 2026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694	7,070	0	278	346

최근 5년 예산 규모



우리구의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7,694억원으로 최근 5년 지속 상승추세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1-2 | 세입예산 규모(재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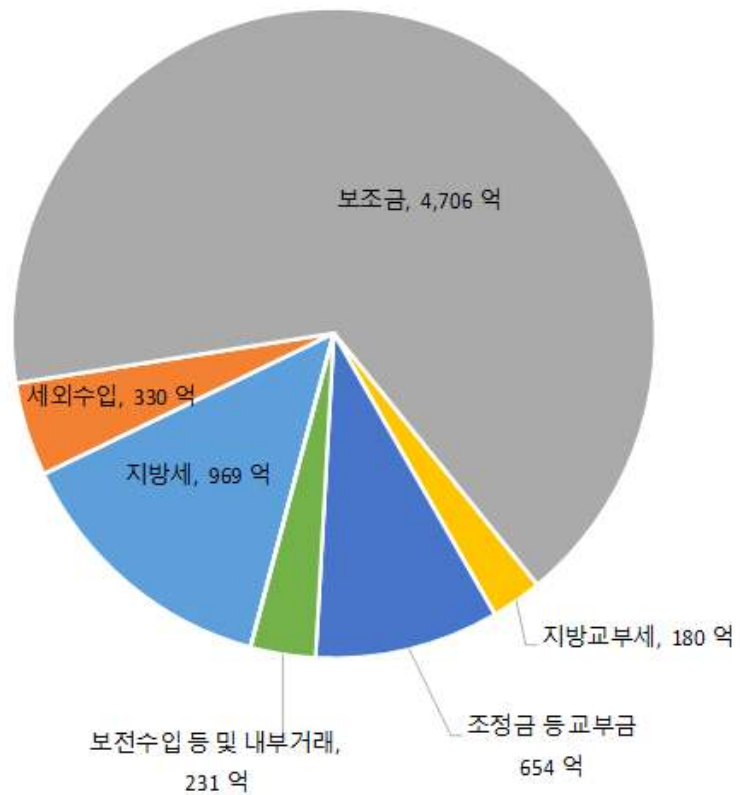
1년 동안 광주광역시 서구에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합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원에 따라 크게 자체수입, 이전재원 등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694	7,070	0	278	346

❖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재원	2026년	
	금액 (억원)	비중 (%)
합 계	7,070	100
지방세	969	13.7
세외수입	330	4.68
지방교부세	180	2.54
조정교부금 등	654	9.25
보조금	4,706	66.56
지방채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1	3.27



♣ 별첨 1 :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

우리구는 세입의 약 18.38%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78.35%를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1-3 | 세출예산 규모(분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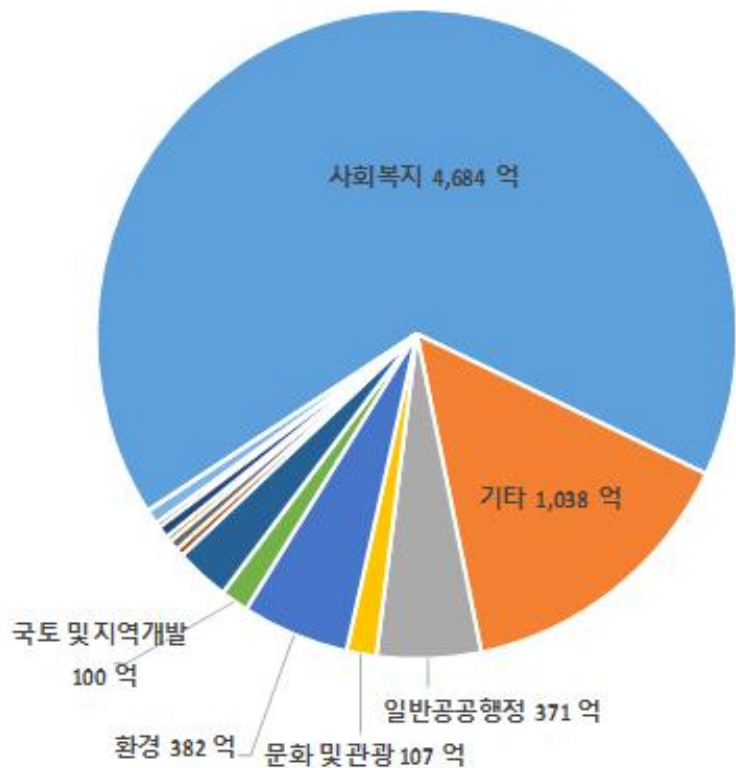
1년 동안 광주광역시 서구의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세출예산은 그 기능에 따라 교육, 보건, 환경 등 총 13개 분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각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694	7,070	0	278	346

❖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세출분야	2026년	
	금액(억원)	비중(%)
합 계	7,070	100
일반공공행정	371	5.25
공공질서 및 안전	18	0.25
교육	36	0.51
문화 및 관광	107	1.52
환경	382	5.40
사회복지	4,684	66.26
보건	193	2.73
농림해양수산	43	0.6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0	0.70
교통 및 물류	28	0.40
국토 및 지역개발	100	1.41
과학기술	0	0.00
예비비	20	0.29
기타*	1,038	14.68



* 기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 별첨 2 :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

우리구는 세출의 약 66.26%를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환경, 일반공공행정, 보건 순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1-4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감율 (B-A)/A
합 계	7,367	8,073	9.58
광주광역시 서구	7,017	7,694	9.64
공사·공단	270	292	8.35
출자출연기관	80	85	5.60
교육청	0	2	0

◆ 공사·공단(1개) :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1개) : 광주서구장학재단

최근 5년 지역통합재정통계



우리구의 지역통합재정예산 규모는 지속 상승추세이며, 특히 자치단체(광주광역시 서구) 예산규모 상승폭이 큰 편입니다.

2 재정 여건

2-1 |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2026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8.38%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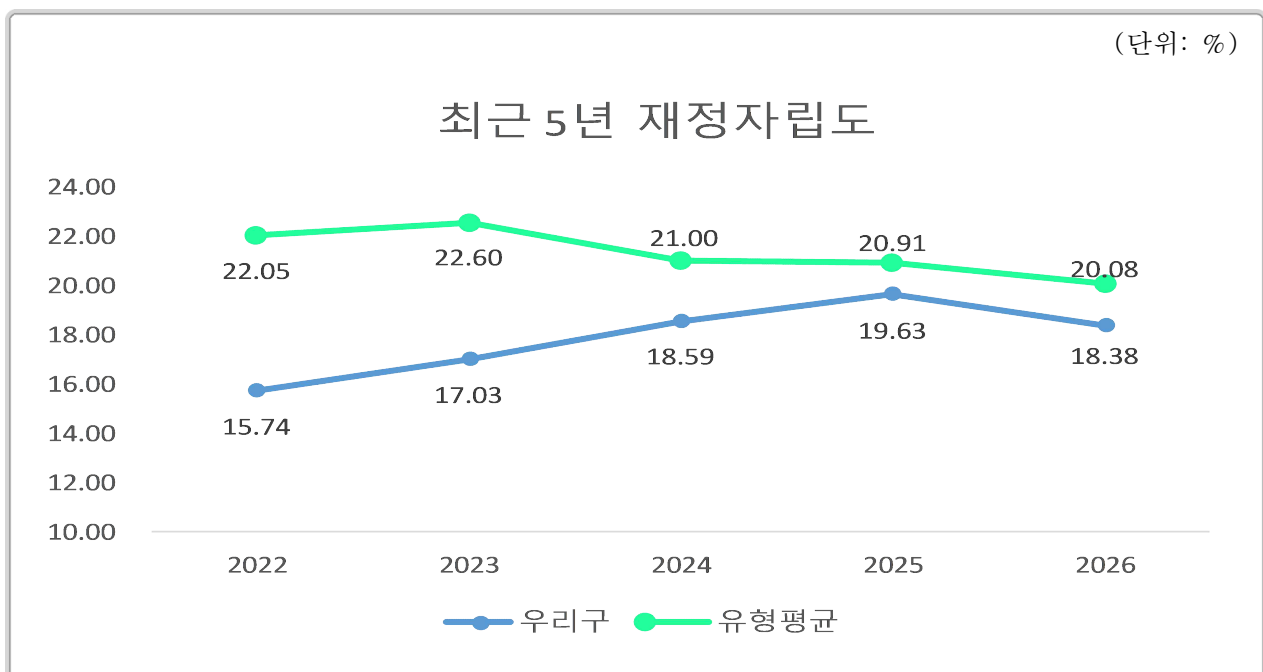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재정자립도 (B/A)	예산규모 (A=B+C+D+E)	자체수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8.38	7,070	1,299	5,540	0	231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최근 5년 재정자립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18.38%로 전년대비 1.25%p 하락하였으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2-2 |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text{※ 재정자주도} = \{(\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 / \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2026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0.17%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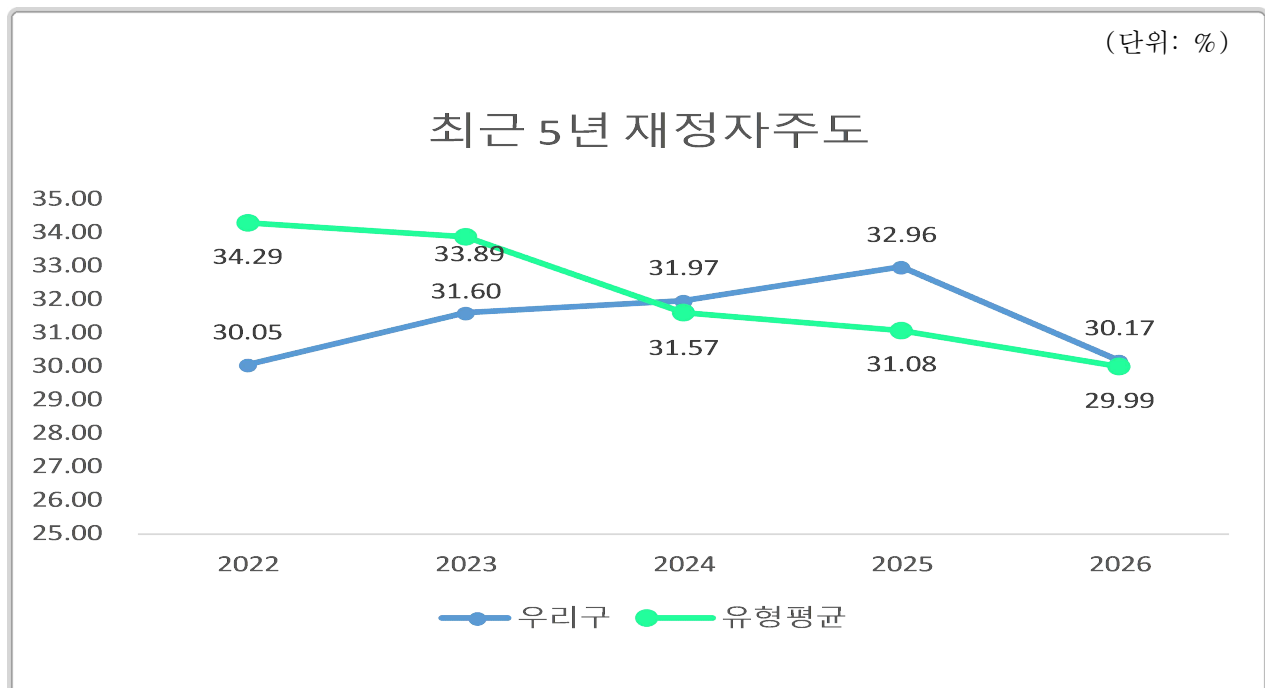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C)/A	세입 합계 (A=B+C+D+E+F)	자체수입* (B)	자주재원** (C)	보조금 (D)	지방채 (E)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F)
30.17	7,070	1,299	834	4,706	0	231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최근 5년 재정자립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0.17%로 전년 대비 2.79%p 하락하였지만,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2-3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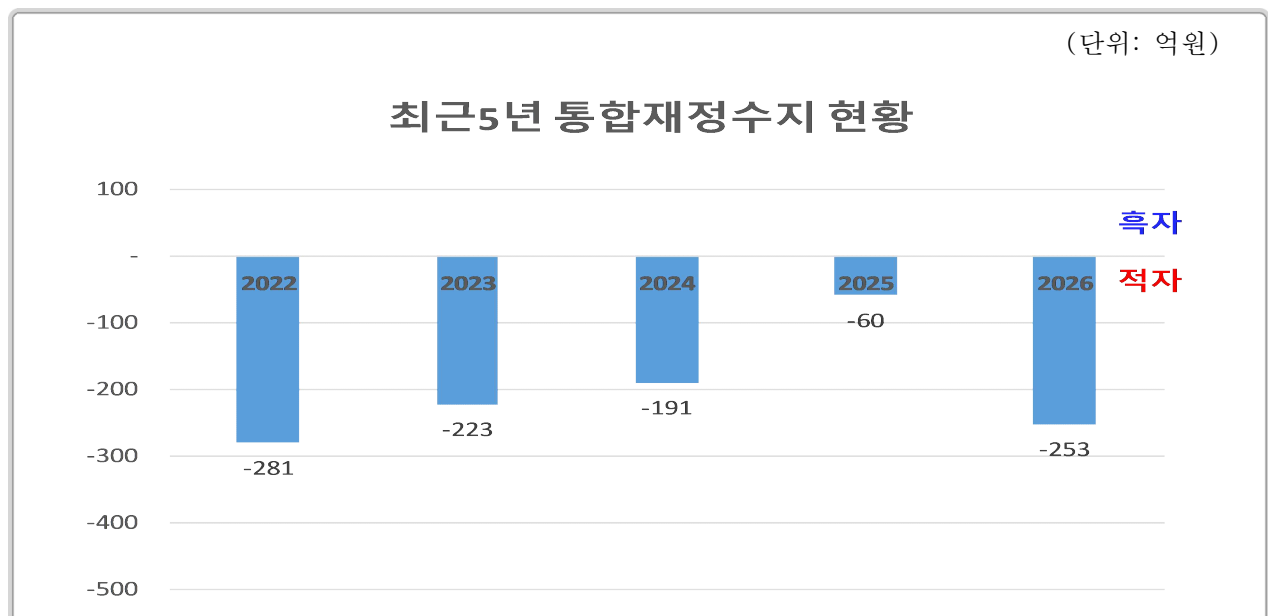
2026년 광주광역시 서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53억**으로 적자입니다.
(단위 : 억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수지 1* (H=A-(B+E))
	세입 (A)	지출 (B)	용자회수 (C)	용자지출 (D)	순용자 (E=D-C)	
총 계	6,949	7,201	1	2	2	-253
일반회계	6,841	7,049	0	0	0	-208
기타 특별회계	82	137	0	0	0	-55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26	15	1	2	2	10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 + 순용자)

※ 실제 지방재정의 흑·적자 규모 표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 산출(별첨)**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 현황



♣ 별첨 3 :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우리구의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1은 253억 적자이나, 전년도 특별교부세 등 연말에 확보되었으나 세입에 포함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수지2는 163억 흑자입니다.

3 재정운용계획

3-1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561	8,528	8,670	8,810	8,927	43,496	1.10%
자 체 수 입	1,402	1,432	1,449	1,468	1,487	7,237	1.50%
이 전 수 입	6,262	6,323	6,476	6,556	6,613	32,231	1.40%
지 방 채 등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97	773	744	786	827	4,028	-2.00%
세 출	8,561	8,528	8,670	8,810	8,927	43,496	1.10%
정 책 사 업	6,643	6,666	6,751	6,830	6,882	33,771	0.90%
경 상 지 출	1,918	1,862	1,919	1,980	2,045	9,725	1.60%

▶ 통합회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 - 1] × 100

3-2 |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구의 202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3	65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	275
성별영향평가사업	29	36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1	17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3-3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 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주민 주도적 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 참여적 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 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 2026년 광주광역시 서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건, 억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4	6	34	6	0	0	0	0	0	0

♣ 별첨 4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및 주민의견서

3-4 |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구의 202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억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12	92	176	203	7,348	6,759	589
의회사무국	1	1	1	2	22	22	0
기획실	1	1	4	2	86	88	-2
홍보실	1	1	2	3	8	9	-1
감사담당관	1	1	3	5	4	4	0
생활정부국	1	7	15	23	193	170	23
문화경제국	1	13	23	28	186	176	10
통합돌봄국	1	13	17	22	2,611	2,278	333
복지일자리국	1	12	21	22	2,107	2,014	93
환경교통국	1	10	17	27	713	685	28
안전도시국	1	17	29	25	146	138	8
행정재정국	1	6	20	25	972	896	76
보건소	1	10	24	19	221	197	24
동행정부복지센터	0	0	0	0	79	81	-2
통합복지국	0	0	0	0	0	1	-1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0	0	0	0	0	0	0

3-5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 지자체 예산안 제출 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된 사항 중 예산 기준으로 산출되는 주요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18.38	30.17	66.26	14.04	71.27	63.16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체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인건비 : 보수(101-01), 기타직 보수(101-02),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18.38%로 자체세입 규모가 동일 유형 지자체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크며, 사회복지 예산비율이 66.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3-6 |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6년도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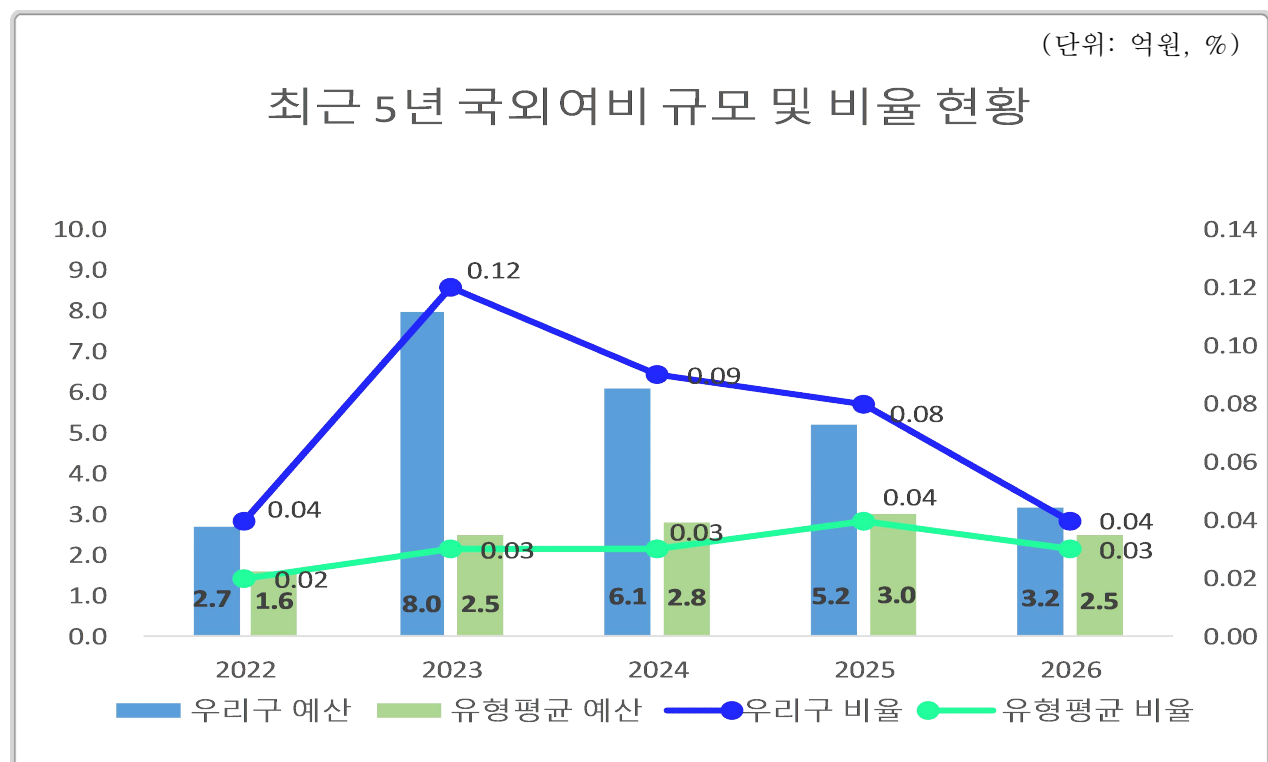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348	3.2	0.3	2.9	0.04

* 공무원 등의 국외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202-03 국외업무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202-04 국제화여비)

최근 5년 국외여비 규모 및 비율현황

(단위: 억원, %)



우리구의 국외여비 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원 감소한 3.2억원이나,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3-7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구가 2026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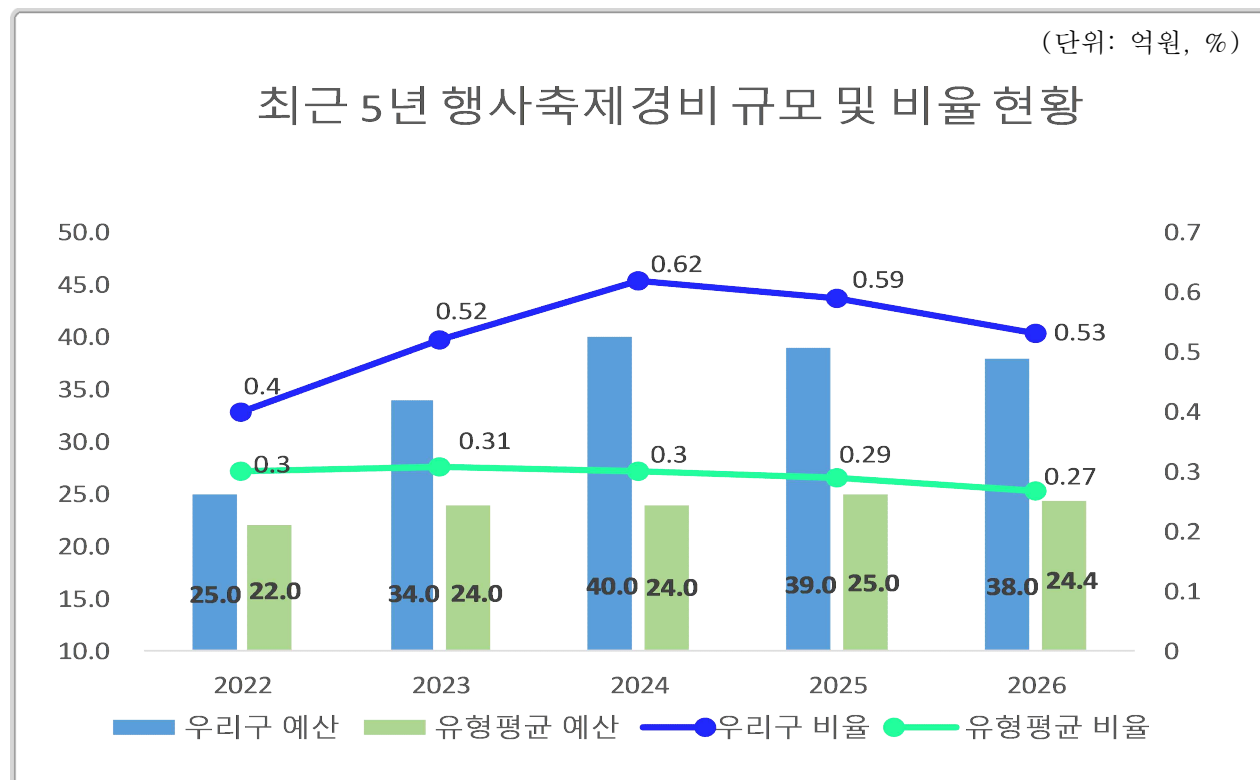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7,070	38	0.53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 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 시설비 (401-04)

최근 5년 행사축제경비 규모 및 비율 현황

(단위: 억원, %)



우리구의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전년대비 약 1억원 감소하였으나, 2026년 기준으로 총예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예산액비율은 동일유형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3-8 |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구의 2026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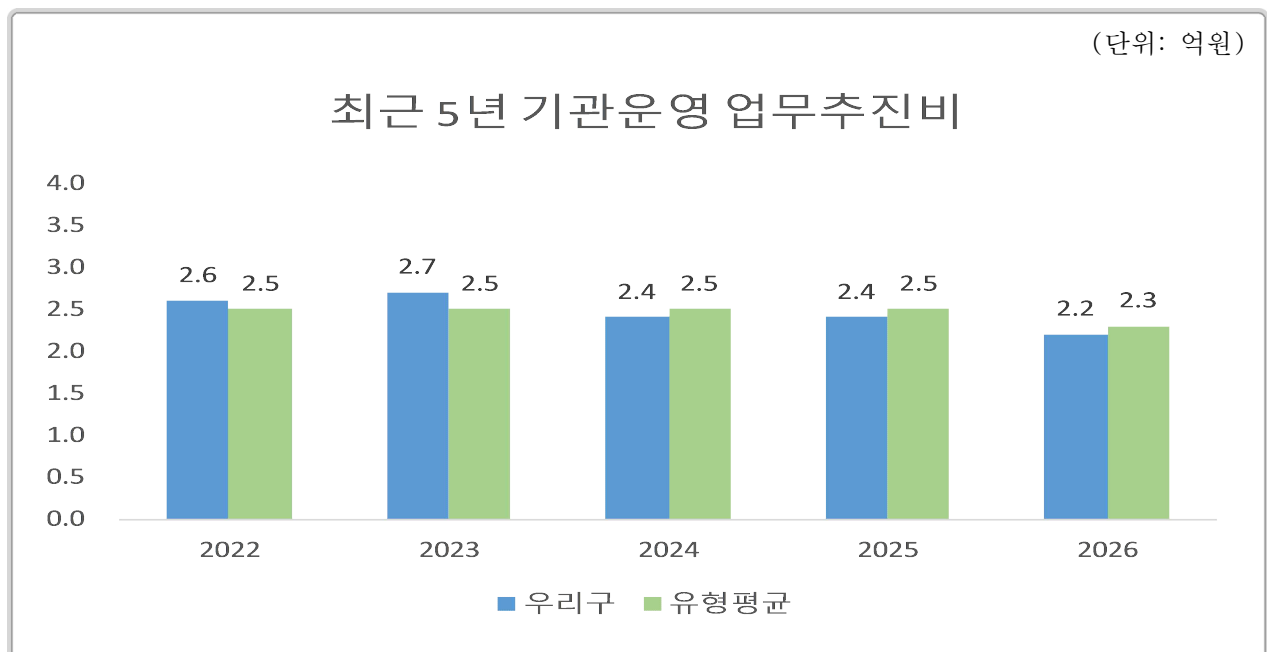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4	2.2	0.5	0.4	1.3	64.42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최근 5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우리구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최근 5년동안 2.5억원 내외의 규모로 총액한도액 내에서 편성하고 있으며, 유형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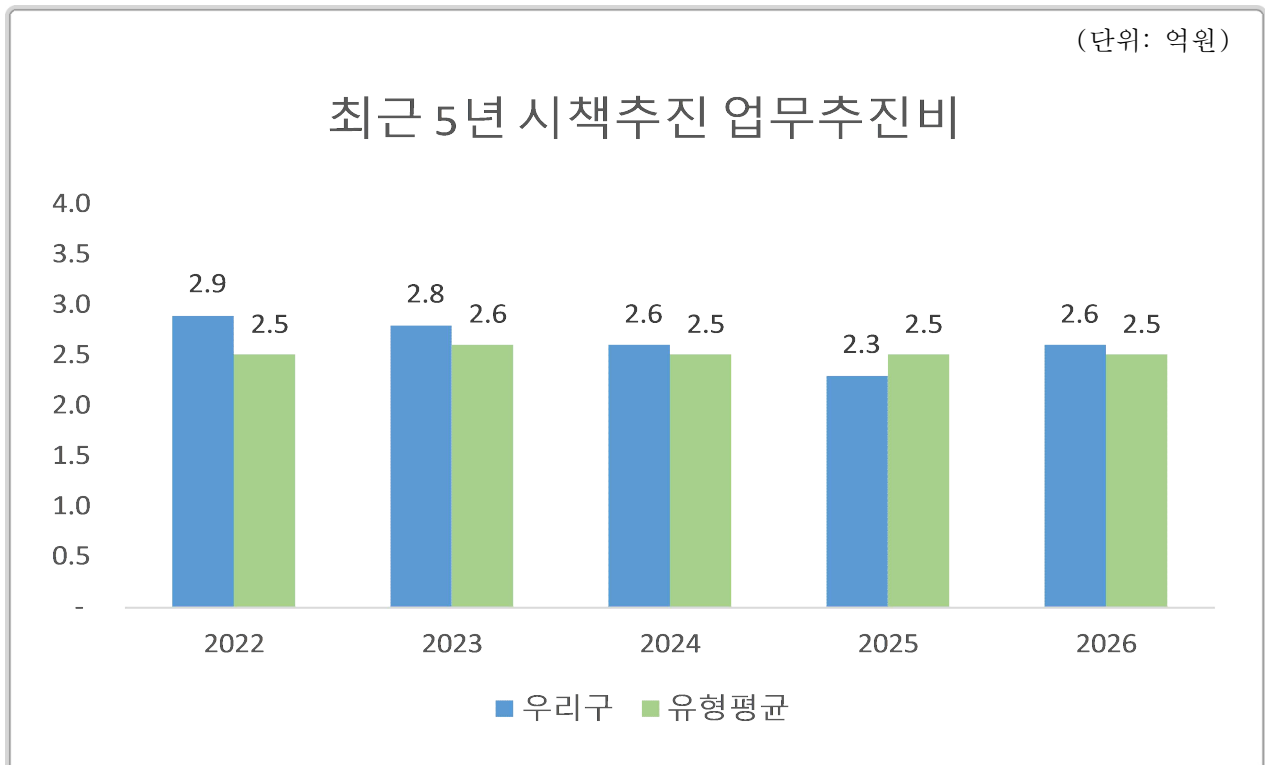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9	2.6	88.55

최근 5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단위: 억원)



우리구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최근 5년동안 2.6억원 내외의 규모로 총액한도액 내에서 편성하고 있으며, 유형평균과도 유사한 수준입니다.

3-9 |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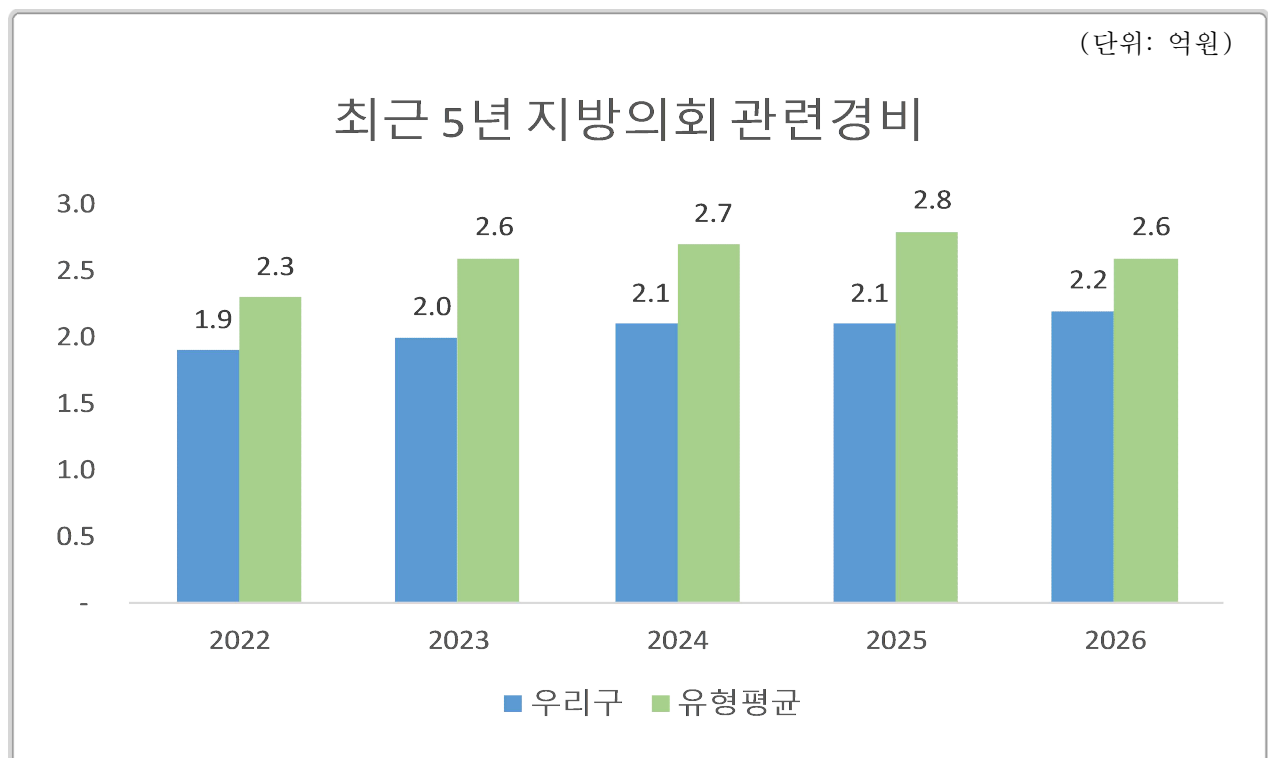
■ 광주광역시 서구의 2026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2	2.2	0.9	0.7	0.5	0.1	100

최근 5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단위: 억원)



우리구의 지방의회관련경비는 상승추세이긴 하나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3-10 |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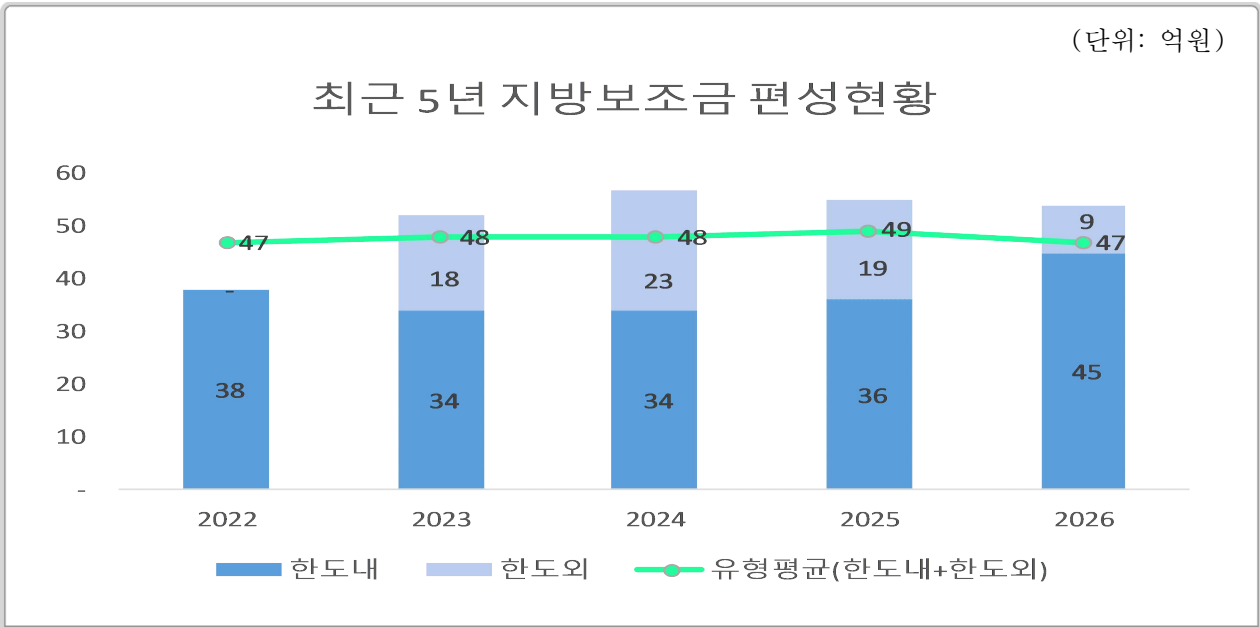
■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2026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총액한도(A)	예산편성액			총액한도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액한도 대상 편성액(B)	총액한도 대상 제외 편성액(C)*	
39	54.6	45.3	9.3	116.04

- ▶ 대상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 일자리 직접 연계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행사,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 등은 총액한도 대상 제외

최근 5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구의 지방보조금은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3-11 |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 우리구의 2026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7,348	32	0.43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3-12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640	2,454,880	1,497
공무원 일·숙직비**	2,940	176,40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419	2,547,520	6,080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출산축하포인트 관련 예산 포함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

※ 단체보험료, 이통장 회의참석비 및 상여금 등 별도 지급액에 따라 상기 표의 1인당 편성액은 기준액과 다를수 있음

<각 항목별 기준액>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1인당 1,497,000원
 - 복지포인트및단체보험 1,342,000원*1,640명, 직원종합건강검진지원 300,000원*820명, 출산축하포인트 200,000원*40명
- 공무원 일·숙직비 : 1인당 60,000원, 숙직비 : 60,000원
- 통·이장 활동보상금 : 1인당 6,080,000원
 - 통장수당 400,000원*12개월, 회의참석수당 20,000원*2회*12개월, 상여금 400,000원*2회

3-13 |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 우리구의 2026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일반예비비 (B)	일반예비비 비율 (B/A)	재해·재난목적예비비 (C)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비율 (C/A)
7,070	12.5	0.18	2.5	0.04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4 재정운용성과

4-1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해당 항목은 자치구 공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광주광역시에 합산반영)

4-2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해당 항목은 자치구 공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광주광역시에 합산반영)

4-3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6년에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내역	감액 사유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400
특별교부세 운영 부적정 (용도변경 미승인)	특별교부세 교부조건 위반	400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4-4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6년에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평가 분야	증액 사유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